

수 신 대표이사
참 조 품질관리인
제 목 2026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품질관리인 위생(보수)교육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협회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64호)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따라 「2026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위생(보수)교육」을 아래와 같이 개설·운영하오니, 해당 품질관리인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교육명 : 2026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위생(보수)교육

나. 교육대상 :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(전문·벤처)에 선임 신고된 품질관리인

※ 당해연도 신규 선임 신고자는 제외

다. 교육개설일 : 2026년 6월 9일(화)

라. 교육이수 기간 : 2026년 12월 31일까지

마. 운영방식 : 온라인+집합 혼합형 교육 실시

※ 금년도 교육은 스마트GMP 정책 및 구축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필요성과, 교육 만족도 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+집합 혼합형 방식으로 운영합니다.

※ 온라인교육(4시간) 이수 후 집합교육(2시간) 참여 또는 집합교육 촬영본 수강을 통해 총 6시간 이수 가능

바. 교육신청 방법 : 건강기능식품·수입식품 온라인 위생교육기관(edu.khff.or.kr)에서 신청 가능

사. 교육시간 및 수강료 : 총 6시간 / 28,000원

4. 아울러, 본 교육은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,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선임 신고된 품질관리인은 금년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집합교육 일정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의 「2026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위생(보수)교육 세부 운영 안내」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「2026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위생(보수)교육 세부 운영 안내」 1부. 끝.

사 단 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

